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호	제2025-209-221호(사건번호 : 2020조총0056)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구청장()
의 결 연 월 일	2025. 5. 14.
7 17	

주 문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이 유

피심인은 '20. 9. 30.에 발송한 추석 명절 인사 문자를 수신한 신고인()이 '20. 10. 5. 피심인에게 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연락처를 알게되었다'고 하는 등 적법한 수집 출처 고지를 하지 않아 舊「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는바,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이미 파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도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3-9호)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5월 14일

위원장 김진환 (서명)

위 원 김일환 (서명)

위 원 김휘강 (서명)